

대구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가단1266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 27.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6. 1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17,699,77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699,7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75826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30. ‘C는 원고에게 31,945,861원과 그 중 18,472,195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7. 21.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2) 2022. 4. 18. 현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액수는 72,953,627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와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

1) 피고의 아버지인 D가 2018. 6. 19. 사망(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E, 자녀인 피고, C, F은 2018. 6. 19.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8. 9. 4.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1. 8. 21.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이하 위 근저당을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다. C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인 2/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H자산관리에 대한 65,168,000원 등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8호증, 1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회답,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의 존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약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망인의 채무 변제와 망인에 대한 생활비, 치료비 지급 등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망인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간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기여분 산정의 협의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가 망인에 대한 생활비 등을 지급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을 제5, 6, 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1)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다만 피고가 2018. 10. 2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351,012원을 전액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을 제2호증의1, 2), 이 사건 지분을 원래대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다세대 주택 J호가 2014년 1억 4,000만 원과 1억 4,3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4년 현재 시가를 1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을 제8호증의1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의 변동추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다세대 주택 지층 K호와 지층 J호 거래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주장한다. 통상 지하층과 지상층의 시가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지층 K호의 거래가액 7,900만 원은 J호와 같은 해에 거래된 것이므로, 지하층과 지상층 가액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피고가 2018. 10. 2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351,012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 가액은 24,366,441원[(1억 4,000만 원 - 30,351,012원) ×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채무가 3,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가액에서 위 채무에 대한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666,666원(3,000만 원 × 2/9)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 가액 17,699,775원(24,366,441원 - 6,666,666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17,699,77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7,699,7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명환

별지